

## 消防法中 改正 法律

◎法律第 3, 413 號

### ◇消防法 改正理由

建築物의 完工에 대한 확인의 同意에 있어서 危險物 製造所등이나 特殊場所의 消防施設에 대한 完工檢査를 받은 때에는 同意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法上 특별한 規制를 받는 高層建築物등 特殊場所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過度하게 規制되었던 事項을 緩和하는 한편, 消防施設의 設置基準에 관한 法令이 改正될 경우 기존 特殊場所의 消防施設에 대하여는 原則적으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國民의 負擔을 덜어 주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建築物의 完工에 대하여 行政廳이 확인을 할 때에는 미리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同意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 확인에 대한 同意에 있어서 危險物製造所등이나 特殊場所의 消防施設에 대하여 完工檢査畢證을 交付한 때에는 이를 同意로 같음하도록 하여 民願節次를 간소화 하도록 함. (法 第 9 條 第 4 項)

나. 消防計劃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規制對象이 되는 高層建築物의 범위를 15 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로 하던것을 31 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로 함. (法 第 11 條 第 1 項)

다. 카텐등의 物品에 대하여 防災處理를 하여야 할 特殊場所의 範圍에서 學校・共同住宅・工場・市場・百貨店・地下街를 제외시키고 特殊場所에서 사용하는 物品이라도 그 特殊場所에 自動式인 스프링클러設備・물噴霧消火設備 또는 泡沫消火設備가 設置되어있는 경우에는 防災處理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法 第 12 條 第 1 項)

라. 危險物販賣取扱所 또는 指定數量の 10 倍未滿의 危險物貯藏所와 煖房을 目的으로 設置한 貯藏所 또는 取扱所에 있어서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危險物取扱에 관한 資格取得者가 아니라도 一定한 講習을 修了한 者를 危險物取扱者로 選任할 수 있게 함. (法 第 18 條 第 1 項但書)

마. 消防施設의 設置基準에 관한 法令이 改正될 경우 기존 特殊場所의 消防施設에 대하여는 原則적으로 改正된 消防施設基準을 적용하지 아니 하도록 함. (法 第 29 條의 2)

바. 消防設備業者등이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完了한 때에는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完工檢査를 받도록 함. (法 第 32 條 第 2 項)

사. 行政官廳이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韓國消防安全協會의 任・職員은 刑法上 賂物罪등의 적용에 있어서 公務員으로 보도록 함. (法 第 70 條의 8)

消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 3 條의 題目“(市長・郡守의 責任과 監督)”을“(市・郡의 責任등)”으로 한다.

第 5 條 第 1 項중 “火災의 豫防”을 “火災의 豫防 또는 鎮壓對策”으로 하고, 同條第 2 項 第 2 號를 삭제하며, 同條第 6 項중 “火災豫防上”을 “火災豫防 또는 鎮壓對策을 위하여”로 한다.

第 6 條를 삭제한다.

第9條第1項중 “用途變更의 許可·認可”를 “用途變更의 許可(建築法第8條 및 住宅建設進法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 “그許可·認可 또는 확인에 있어서”를 “그許可 또는 확인에 있어서”로 “許可, 認可 또는 확인을 할 수 없다.”를 “認可 또는 확인을 할 수 없다.”로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에 대한 同意에 있어서는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完工檢査畢證을 交付함으로써 同意에 같음한다. 이 경우 市長 또는 郡守는 完工檢査畢證을 確認하여야 한다.

第11條第1項중 “15 미터”를 “31 미터”로, “防火管理上 필요한 業務를”을 “防火管理上 필요한 事項을”로 한다.

第12條第1項중 “高層建築物”을 “高層建築物(共同住宅을 제외한다)”로 하고, “學校·共同住宅·工場·市場·百貨店·圖書館·地下街 또는”을 삭제하며, 同條同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스프링클러設備·물噴霧消火設備 또는 泡沫消火設備로서 自動式인 消火設備가 設置된 消防對象物에서 사용하는 物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第1項但書중 “10 日 이내 의”를 “60 日 이내의”로 한다.

第16條第1項중 “基準(이하 “施設基準”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를 “基準(이하 이 章에서 “施設基準”이라 한다)은 內務部令으로 정한다”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設置基準”을 “施設基準”으로 한다.

第18條第1項本文중 “資格證所持者”를 “資格取得者”로 하고, 同條同項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危險物販賣取扱所 또는 指定數量の 10 倍末滿의 危險物貯藏所와 煖房을 目的으로 設置한 貯藏所 또는 取扱所(호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內務部令이 정하는 講習을 修了한 者를 危險物取扱者로 選任할 수 있다.

第18條第2項중 “危險物取扱主任은”을 “危險物取扱主任 또는 危險物取扱者는”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危險物取扱主任을”을 “危險物取扱主任 또는 危險物取扱者를”로, “危險物取扱主任의”를 “危險物取扱主任 또는 危險物取扱者の”로 하며, 同條第4項중 “資格證所持者”로 하고, 同條第5項중 “危險物取扱主任을”을 “危險物取扱主任 또는 危險物取扱者를”로 한다.

第20條의 題目 및 第1項 내지 第3項중 “豫防規定”을 각각 “豫防規程”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第16條”를 “第16條第1項”으로 하며, 同條第1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場所에 設置된 製造所등의 豫防規程은 第10條第2項第1號의 消防計劃으로 이를 같음할 수 있다.

第27條중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の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內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第29條第1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를 “內務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로 한다.

第29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9條의 2(消防施設基準 적용의 特例) 第29條第1項의 消防施設의 基準에 관한 大統領令 또는 內務部令의 變更으로 그 基準이 強化된 경우에는 기존 特殊場所(建築物의 新築·増築·改築·移轉·大修繕등의 工事중인 特殊場所를 포함한다)의 消防施設(消火器具·警報設備 및 避難設備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基準을 적용한다.

第30條第1項 및 第2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중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① 第16條第1項 및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業 또는 整備業(이하 “消防設備業”이라 한다)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6條第1項 및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消防設備技士(消防設備技術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責任下에 行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1條중 “消防設備技士가 行할 수 있는”을 “消防設備技士의 責任下에 하여야 할”로 한다.

第3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2條(消防施設의 施工申告등) ① 第16條第1項 및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하고자 하는 者는 內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消防施設의 種類·施工場所 기타 필요한 事項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完了한 者는 內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完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檢査結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적합한 때에는 內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完工檢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第38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9項 및 第10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2項의 檢定の 基準이 될 消防用機械·器具등의 形狀·構造·材質·成分·性能·檢定合格表示 기타 필요한 事項은 內務部令으로 定한다.

④ 內務部長官은 關係者등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消防用機械·器具등에 대한 性能試驗을 할 수 있다.

⑤ 第9項의 性能試驗에 관하여는 第2項·第5項 및 第40條第2項·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9條第3號중 “檢定”을 “檢定 또는 性能試驗”으로 한다.

“第10章 罰則”을 “第12章 罰則”으로 하고, 第70條의 8앞에 “第11章 補則”을 插入하며, “第9章의 2 補則”을 “第10章 韓國消防安全協會”로 한다.

第70條의 4 第1項第1號중 “申告의 義務가 있는 消防關係者”를 “申告義務가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로 하고, 同條第1項第2號 및 同條第2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防火管理者·危險物取扱主任·危險物施設安全員 또는 消防設備技士로 選任되거나 雇傭된者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者는 許可·登錄 또는 申告되거나 選任 또는 雇傭된 날로부터 會員이 된다.

第70條의 8을 第70條의 9로 하고, 第70條의 8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0條의 8(任職員의 公務員身分 擬制) 第70條의 3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官廳이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協會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들 公務員으로 본다.

第70條의 9(중건의 第70條의 8) 第1項중 “內務部長官”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으로, “防火管理者·消防設備技士·危險物取扱主任 및 危險物施設安全員”을 “防火管理者·危險物取扱主任·危險物取扱者·危險物施設安全員 및 消防設備技士”로 하고, 同條第2項을 第3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對象者가 所定の 教育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教育對象者를 選任 또는 雇傭한 者에 대하여 防火管理者・危險物取扱主任・危險物取扱者・危險物施設安全員의 解任을 命하거나 消防設備技士の 解雇를 勸告할 수 있다.

第70條의 10 및 第70條의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0條의 10(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内務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外에 따라 道知事・市長(서울特別市長과 釜山市長을 제외한다)・郡守 또는 消防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70條의 11(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2條 내지 第78條의 題目“(同前)”을“(罰則)”으로 한다.

第74條중 “10萬원이하의 罰金에”를 “100萬원이하의 罰金에”로 한다.

第75條중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萬원이하의 罰金에”를 “50萬원이하의 罰金에”로 한다.

第76條중 “3月이하의 懲役 또는 3萬원이하의 罰金에”를 “30萬원이하의 罰金에”로 하고 同條 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火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 또는 第1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取扱者를 選任하지 아니하고 事業을 행한 者

第77條중 “2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10萬원이하의 罰金에”로 하고 同條에 第11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1. 第70條의 9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違反한 者

第78條중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怠慢히 한 者는 1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怠慢히 하거나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는 5萬원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에”로 한다.

##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